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7-28

부 산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2062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변 론 종 결	2015. 5. 29.
판 결 선 고	2015. 6. 19.

주 문

1. 피고가 2014.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재산세 29,992,150원 및 지방교육세 6,000,6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4. 12. 19.'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7-28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B 외 1필지 합계 1,608㎡와 그 지상 7층 건물을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0. 8.경 위 건물 중 4층을 C에게 임대하였고, C은 2010. 8. 10.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아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부산광역시 감사 결과 이 사건 주점이 재산세 중과에 대한 시설기준이 완비되어 있고, 수시로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으므로 재산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고, 2014. 1. 5. 원고에 대하여 2013년 재산세 29,992,150원, 지방교육세 6,000,690원의 합계 35,992,8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1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점은 기존에 룸살롱으로 이용되던 영업장으로, 객실이 철거되지 않은 채로 노래 반주시설을 갖추고 있고, 객실이 통로형태 또는 복도형태로 설비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이나 단란주점영업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것일 뿐 실제로 유흥접객원을 둔 적이 없었기 때문에 유흥접객원을 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7-28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주점은 바닥과 복도 전체가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반영구적으로 구획되고 독립적인 객실 12개를 보유하며 객실 내부에 노래반주기, 화장실 등 시설을 갖추고 있다.

2) 2012. 12.부터 2013. 8.까지 이 사건 주점의 신용카드 월 평균 매출 건수는 95.6건, 1회 평균 매출액은 29.9만 원이고, 2012. 1.부터 2013. 6.까지 월 평균 양주 구입량은 583병이다.

3) 피고는 재산세 중과세 부과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3. 5. 31. 이 사건 주점을 현장 확인하였으나, 당시 담당공무원은 '유흥접객원 고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냉장고에 소주, 맥주 등이 진열되어 있어 중과에서 제외함'이라는 내용의 현장확인 복명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6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 의하여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기 위해서는, ①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한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② 유흥접객원을 두어야 하며, ③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주점이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고,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주점이 유흥접객원을 두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7-28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기존의 유흥주점 영업장을 그대로 인수하면서 구조변경 없이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고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주점의 규모와 시설에 비추어 C이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은 든다.

그러나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는데,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주점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하였을 것이라는 추측 또는 개연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 이 사건 주점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실제로 담당공무원이 재산세 중과세 부과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점을 방문하였음에도 유흥접객원 고용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주점의 신용카드 월 평균 매출 건수에 비하여 월 평균 양주 구입량이 상당히 많은 편이므로 신용카드 1회 평균 매출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것이 무리라고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의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점이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점이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7-28

재판장 판사 이흥구

판사 인진섭

판사 김두홍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7-28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7-28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관광극장유흥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7-28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끝>